

■ 토론회 자료집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 일 시 : 2014. 09. 23. (화) 10:00~12: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층)
- 주 관 : 문병호의원, 우상호의원, 최원식의원
- 주 최 :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생생포럼

<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 >

□ 인사말

- 문병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부평구갑,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위원)
- 우상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서대문갑,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간사)
- 최원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계양구을,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위원)

□ 토론회

○ 사 회 :

- 조성갑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숭실대학교 IT대학 교수)

○ 발 제 :

1) 단말기유통법 제정의 취지와 의의

-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2)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이동통신시장 개선방향

- 한현배 (KAIST 통신공학 박사. 아주대 겸임교수)

3) 가계통신비 인하 및 통신공공성회복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토 론 :

1)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

2) 박희정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3) 하창직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사무국장)

4)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5) 방송통신위원회

※ 문의 : 문병호의원실 (02-784-6150)

■ 인사말

가계통신비 절감위해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 확보해야

국회의원 문 병 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부평구갑,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문병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단말기유통법과 가계통신비 절감에 깊은 관심을 갖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형적이고 혼탁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로잡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의 시행이 10월 1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미래부가 제정해야 할 시행고시 5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시행고시 6개 등 총 11개의 고시내용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제정안에 다른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일부 업계가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 보조금 상한선, 사전승낙제, 긴급중지명령 기준 등 핵심쟁점에서 업계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정부 부처 간의 의견과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진통 끝에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의 취지와 의의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런 우려스런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고시안이 왜 오락가락하는지 짚어보고, 업계와 정부, 소비자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실효성 확보방안과 통신공공성 회복 운동의 향후 과제도 살펴 가계통신비의 지속적인 인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단말기유통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고 그 의의가 아무리 획기적이라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 대기업의 이해에 휘둘리지 말고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단말기유통법의 취지에 맞게 고시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조성갑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류제명 미래부 과장님, 한현배 아주대 교수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자로 나서 주신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님,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님, 하창직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사무국장님,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님과 방청을 위해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소비자,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단말기유통법’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9월 23일

■ 인사말

통신시장 정상화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

국회의원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서대문갑,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간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우상호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통신시장은 ‘호갱님(=호구 고객님)’ 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혼탁합니다. 정보 취득이 상대적으로 느리거나 어려운 계층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호갱’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당사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를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절감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바야흐로 이동통신시장이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의 공급자인 제조사, 통신사 그리고 유통업체의 건전한 질서와 기준, 역할의 재정립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 소비문화의 변화로 합리적 소비풍토가 함께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근본적인 통신시장 정상화를 이룰 수 있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일부에게만 주어졌던 불법보조금이 모든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제조사는 합리적 가격을 책정하며, 통신사는 치킨게임에서 벗어나 통신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단말기유통법’ 이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서 정착되어 가계통신비 절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및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9월 23일

■ 인사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도 단말기시장 유통구조 개선에 더 노력해야

국회의원 최 원 식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계양구을,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최원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토론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고가 요금제 연계를 통한 통신 과소비 조장,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 따른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 축소, 빈번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자원 낭비 심화 및 단말기 구입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과 왜곡된 시장구조가 수년간 누적되어 왔습니다.

기존 제도와 시장 메커니즘으로는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던 상황에서 왜곡된 이동통신시장 구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단말기유통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가계통신비 인하의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지만, 사업자간 이해다툼에 휘말린 정부 부처 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과연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단말기유통법 제정 취지와 의의를 짚어보고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단말기유통법을 비롯한 정책방향, 규제방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반값 가계통신비 현실화를 위한 보다 진지하고 발전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 또한 오늘 토론회의 의견을 정책과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에 사회를 맡아주신 조성갑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미래부 류제명 과장님, 한현배 아주대 교수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을 비롯하여 참여해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23일

단말기 유통법 제정의 취지와 의의

■ ■ ■ 류 제 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1. 우리나라 단말기 유통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에는 세계 유래가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임
- (소비자 피해) 같은 휴대폰이라도 가격이 판매점, 구입시간(낮/밤) 등에 따라 20~7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

- ① (이용자 차별1) A모델에 대해 서울 동대문 매장에서는 36만 8천원, 서울 종로 매장에서는 25만 8천원, 인터넷 공동구매 U사이트에서는 56만 9천원의 보조금 지급('13.3.8, 주일보)
 - ② (이용자 차별2) B모델에 대해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는 9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반면, 기기변동 가입자에게는 8만원의 보조금만 지급('14.1.27, 경일보)
 - ③ (이용자 차별3) C모델에 대해 출고가(95만4천원)보다 오히려 보조금(120만원)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까지 등장('14.2.12, 주일보)

- (고가폰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이통사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교체(약 16개월로 세계 1위)를 유도하고, 고가요금제(6만원대 이상) 가입을 연계시킴으로써 통신 과소비 조장
⇒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계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4.3%)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13.7월)

- ◇ 가트너 자료('14.3월)에 따르면, 프리미엄폰과 베이식폰 각각 우리나라의 평균 공급가는 조사대상 국가 중 1위로 가장 높음
 - ◇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자료('13.7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휴대폰 평균 공급가(ASP)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415달러를 기록
 - 전 세계 평균인 166달러에 비해 2.5배 높은 편으로 조사
 - ◇ '13년 기준 국내 연간 단말기 교체율은 77.1%(단말기 교체주기로 환산 시 15.6개월)로 세계 1위를 차지 (SA, '14.4월 자료)
 -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13.2월, 이용자 1,511명 대상)에 따르면 LTE62요금제의 경우 기본제공량 대비 음성은 63%, 문자는 28.5%, 데이터는 56.7%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말기 유통 독과점 및 시장경쟁 제한) 포화된 시장에서 가입자 빼기
를 위한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은 요금경쟁을 대체하고 시장경쟁구조
를 왜곡
- 우리나라 99% 이상이 이통사가 단말기를 유통하는 시장으
로 유통망간 경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유럽의 경우 약 40~50%가 일
반 유통)

2. 단말기 유통법 제정 필요성

① 기존 보조금 규제의 한계 극복

- 보조금 규제 일몰 이후 8차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보조
금 차별 지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에 직면
 - ※ '08년 3월 보조금 규제 일몰 이후 7차례의 방통위 제재가 이루어졌으며, 올
해도 미래부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을 내림
-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과도하고 차별적인 보조금으로
인해 이용자 후생이 왜곡되는 등 시장 실패가 십수년 간 누적되어 이
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

<'08년 이후 보조금 제재 주요 내용>

제재 일시	주요 내용
'10.9.24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8.8억원 부과
'11.9.19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6.7억원 부과
'12.12.24	시정명령, 이통3사 신규모집금지와 과징금 총 119억원 부과
'13.3.14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3.1억원 부과
'13.7.18	시정명령, KT 신규모집금지와 과징금 총 669.6억원 부과
'13.12.27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64억원 부과
'14.3.7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45일간 사업정지 명령 부과(미래부)
'14.3.14	시정명령, SKT, LGU+ 신규모집금지와 과징금 총 304.5억원 부과

② 이통사만 제재하는 현행 보조금 규제의 한계 극복

- 지금은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적극적인 유통자의 지위'에서 장려금을 통해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주체로 등장
 - 또한 대리점 · 판매점에 의해서도 불 · 편법 보조금 지급사례가 증가하는 등 대리점 · 판매점에 대한 제재 필요성도 존재
 - 따라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이통사만을 제재하는 보조금 규제는 유통시장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제도개선 요구
- ③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이통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
 - 법은 현실을 반영하여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의 상황에 맞게, 시장실패 영역을 치유하기 위해 제정될 필요

※ (예) 눈이 많고 겨울이 긴 나라(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에서는 스노우 타이어 장착이 의무화

- 해외에서는 우리와 같은 심각한 이용자 차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공시',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선택제' 등도 이미 도입되어 있음

3. 단말기 유통법의 주요 내용

◆ 소비자들의 극심한 가격차별을 해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가 단말기 중심의 독과점 유통구조를 정상화하여,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산업의 건전한 경쟁 활성화 도모

① 보조금 지급구조의 투명화 및 차별해소

- (보조금 차별 금지)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

- ⇒ 번호이동,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과도하게 집중하는 문제점을 해소
- (보조금 공시) 이통사, 유통망이 단말기별 출고가(A), 보조금(B), 판매가(A-B)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 ⇒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함
- (보조금 상한제) 이통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정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보조금 과다 지급 경쟁을 제한
 - ⇒ 보조금 안정화를 통해 이통사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품질과 요금으로의 경쟁을 유도

② 이용자의 단말기 · 서비스의 합리적 선택 지원

-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사용을 강제하는 약관 외의 불공정한 개별계약 체결을 무효화
 - ⇒ 소비자가 자신의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실질 요금부담 경감 가능
-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서비스 단독 가입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
 - ⇒ (가) 중고폰, 중저가폰 이용이 증가하여 단말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나) 요금 할인 선택으로 요금지출도 절감 가능

③ 단말기 유통 시장 건전화

-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 시 이통사가 사전 승낙하도록 하여, 이통사에게 판매점 관리 · 감독 책임 부여
 - ※ 이통사가 승낙제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 거부 · 지연 금지(수정대안 포함)
- 대리점 · 판매점의 위법 행위* 제재
 - *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서비스 약정 요금할인 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선전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이통사(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제조사(대리점·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 등) 자료제출 의무 부과
⇒ 불편법 영업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감소하고 건전한 단말기 판매구조로 개선

4. 기대 효과

- ① 보조금 대란, 부당한 소비자 차별이 없어짐
 -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금 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 극소수가 '공짜폰' 혜택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는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되는 현행 유통구조가 대다수의 소비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구조로 정상화됨
- ② 보조금 대란, 부당한 소비자 차별이 없어짐
 -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가 도입되어,
 -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 자급제 및 중저가 단말기 사용이 활성화되어 단말기 교체주기가 늘어나고 단말기 비용부담이 줄어듦
- ③ 불필요한 고가요금제(6만원대 이상), 부가서비스 등의 의무사용 금지
 - 음성적인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등 의 사용을 강제하는 이면계약을 금지·무효화함으로써,
 - 소비자는 불필요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억지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고, 원하는 요금제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짐
- ④ 공짜폰 등 허위광고가 사라짐
 - 서비스 약정 시 지원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되어, 공짜폰이라고 호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없어짐

□ 단말기 보조금 규제

- '00.6월부터 '08년 3월까지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
 - '00.6월부터 이용약관을 통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 '03.3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보조금 지급 금지('06.3월까지 3년 한시)
- ※ 이용약관을 통한 보조금 금지 이후에도 우회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고 선발사업자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 '06.3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재개정을 통해 '08년 3.26까지 보조금 규제 일몰 기한을 2년 연장
- ※ 단, '06.3월부터는 18개월 이상 가입자의 보조금 지급은 허용함
- '08년 3월부터는 보조금 규제 일몰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 '10년 9월 방통위 심결로 보조금이 2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 차별행위로 보아 금지

<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

구분	보조금 규제 제도	비고
'00. 6	이용약관을 통한 단말기 보조금 금지	-
'03. 3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조금 금지 법제화	3년 일몰 규제
'06. 3	전기통신사업법 보조금 규제 2년 연장	18개월 이상 가입자 보조금 허용
'08. 3	보조금 규제 일몰	-
현재	보조금 관련 이용자 차별 규제	인당 27만원 초과 보조금 금지

◇ 현행 규제 제도

- 방통위는 심결('10.9월)로 보조금 상한 27만원*을 설정하고,
 - 동 상한을 초과하여 특정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지하고 있음

*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가 해당 이통사에서 가입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24.3만원)과 가입자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2.5만원)을 합하여 도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이동통신시장 개선방향

■■ 한 현 배
KAIST 통신공학 박사
아주대 겸임교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이동통신시장 개선방안

TABLE OF CONTENTS

- 이동통신 단말비용 추이
- 이동통신 이용요금 ARPU 추이
- 단말기 유통법과 통신비 인하 효과
- 통신사 수익구조
- 통신사 수익구조 고찰
- 통신 단말의 변화와 수익에 대한 시각
- 반값통신 현실화 가능한가?

2014. 09

한현배



이동통신 단말비용 추이 (L사의 경우)

마케팅비용의 상승은 고가의 단말기 보급을 위한 보조금 증가가 주된 원인

- 2010년에는 단말기의 출고가가 35~50만원 수준, 보조금 20~25만원
- 2012년에는 단말기의 출고가가 92~100만원 수준, 보조금 30만원 이상
- 2014년에는 단말기의 출고가가 84만원 수준, 보조금 45만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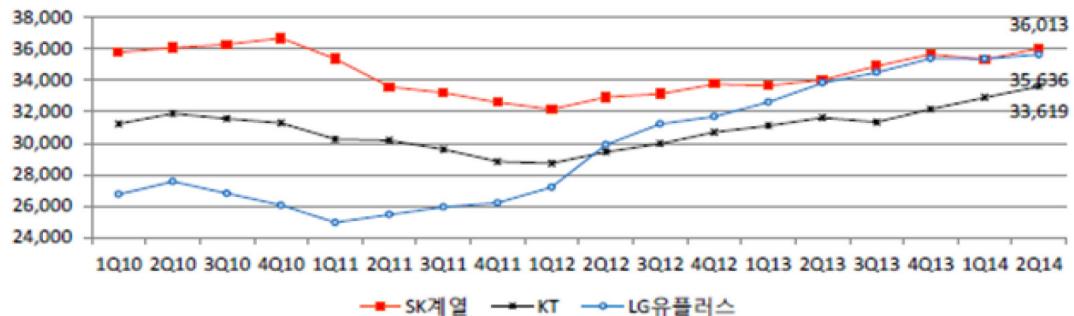


이동통신 이용요금 ARPU 추이

- 2010년 3분기 이후 3G의 ARPU 약세로 힘들었던 통신사들에게는 LTE는 호재였고, 가입자유치 경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이동통신 ARPU 추이^{주)}

(단위: 원)



주) 접속료 및 기입수익 제외한 서비스수익의 ARPU

자료: 각사 IR 자료

단말기유통법과 통신비 인하 효과

평균적 이동통신비의 구성

- 이용요금 + 단말기비용 $\approx 35,000 + 10,000 = 45,000$ + 할부이자 + 부가세

단말기유통법의 통신비 인하효과

- 고가폰, 고가요금제 사용 \Rightarrow 저가폰, 원하는 요금제 선택
- 중고폰, 저가폰의 시장 점유율 미미
 - ✓ 수거율량 신제품의 5~10%, 국내유통물량 짐계 없음
- 고가요금제 회피 효과 산정 난이, 음성 및 데이터 사용을 증가가 요금인하와 직결하지는 않음
- 억울한 이용자 구임비 차별 없앤다.
- 흔탁한 시장을 정화시킨다.

단말기 가격 인하에 도움은 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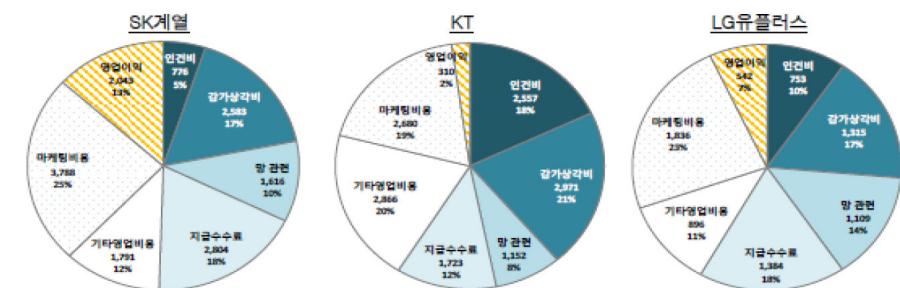
- 해택은 사용자 봉인가? 통신사 봉인가? 제조사 봉인가?

통신사 수익구조

- 설비비 + 영업비(마케팅비 + 기타영업비) + 인건비 등

서비스수익 대비 고정비 비중 - 2013년

(단위:십억원)



주 1) 망 관련 비용은 접속료, 회선료, 전피사용료 등의 합산

2) 지금수수료는 각 사 지금수수료에서 판매수수료 차감함. LG 유플러스는 외주용역비까지 합산

3) SK 계열, KT 는 벌도기준, LG 유플러스는 연결기준

자료: 각사 IR 자료, 공시자료 재구성

통신사 수익구조 고찰

설비비 분석

- 1G, 2G, 3G [음성통신, 64Kbps] => 4G[데이터통신, 인터넷, 수십 Mbps 이상]
- 가입자 수 증가
- 대한민국의 지역적 특성 [좁은 면적 높은 인구밀도]
- 무어의 법칙[반도체 기술의 성장은 18개월마다 2배씩 성장]
- 메탈프의 법칙[네트워크 사용가치는 가입자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영업비 분석

- 매출의 25~34%로 비중이 커짐
- 과점상태에서도 과다한 지출

인건비 분석

- 조직규모, 운영의 효율성이 깊이 관여됨

통신단말의 변화와 수익에 대한 시각

단말의 변천

- 피처폰 => 스마트폰 => 스마트기기, IoT, 사물통신 => 미래의 혁신적 단말(???)
-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Quantum jump
 - ✓ 기능의 혁신 => 급속한 기술개발 => 급속한 가격하락
- 단말 H/W가격의 하락은 이미 예견된 것, 그러나 닥치기 전까지 믿지 않을

통신단말기 수익에 대한 시각

- 3개 통신사는 같은 네트워크에서 같은 서비스를 출시, 차별화는 단말 마케팅
- Apple은 iPhone으로 돈 벌려 했는가?
- 아마존은 캔들로 돈을 벌려 하는가?
- 샤오미가 단말기 판매로 돈을 버는가? 실제 마진 1.5~2% 추구

반값통신 현실화 가능한가?

설비비

- 효율성이 최소 수백배 이상 높아져, 신규투자비 부담을 충분히 감당 가능 : 유선 초고속인터넷 사례
- 많은 가입자 수, 밀집도 높은 구조는 일반적 해외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비비 절감 가능

영업비

- 과정체계에서 영업비의 역할은?
- 과감한 국가적 차원의 비용절감이 필요
 - ✓ 완벽한 아웃소싱, 제휴로 사업비용 절감 등 획기적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통신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경쟁을 어용한다면?

단말가격

-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업의 양성이 가능한 자율적 분위기 조성으로 disruptive innovation 유도.
- 차량네비게이션, MP3의 사례 (새로운 단말의 출현도 기대, 아마존 캔들, 카톡단말 등)

가계통신비 인하 및 통신공공성회복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 진 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가계통신비 인하 및 통신공공성회복운동의 성과와 과제

-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회복이 절실합니다!

1. 들어가며 :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실로 막중합니다.

1) 시민·소비자들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

- 통신비 부담완화 핵심은 “단말기요금·기본요금·정액요금의 대폭 인하 및 개선”
- 기본요금의 폐지와 문자요금의 완전한 무료화 역시 포기할 수 없는 목표
- 박근혜정부는 가입비 즉시 폐지 공약과 통신비 인하 공약을 이행해, 반값통신비 실현하라!

2) 근본적인 문제 의식

- 교통, 도로 등에 있어서는 국가와 정부가 이에 대한 이용을 보편적 무상(세금)으로 보장하고,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고속도로의 경우 등에 있어서만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는 데 반해, 비슷한 취지의 공공적 교통(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자 생활 필수재인 통신에 있어서는 이를 왜 민간대기업의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변질 시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임.
- 교통, 도로 등은 소유, 시공, 관리, 유지·보수 등까지 모두 국가나 정부가 담당하고 있고, 일부만 유료화, 일부만 민영화되어 있지만, 통신은 그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유무선, 인터넷 통신 까지 모두 민간 대기업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아예 엄청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통신 역시 정부가 소유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며, 제한적으로 이용요금을 받는 것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인지(예전 초기 상태의 통신공공성으로 복원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제안드림(중·장기적 토론 필요)

3) 통신요금·통신이슈 관련 6대 요구안

- 단말기 폭리·담합 제거
-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 망내·외 무제한(내지 할인) 요금제 기준요금 인하
-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 통신사·통신서비스 공공성 회복
- 알뜰폰 영역에서의 이동통신 3사 철수 또는 시장점유율 30% 이내 유지, 망 도매 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한 알뜰폰 요금 추가 인하

4)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조항만 살펴봐도 통신요금·통신공공성 문제의 해법이 보입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역무의 제공 의무 등)

-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3.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 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법인만 받을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은 제외하고,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 ②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직접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취소처분이나 폐지명령을 받은 자가 법인이면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1조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관련판례별칙규정

- 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③ 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신설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 3. 재무건전성
-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④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5.19][[시행일 2011.11.20]]
- ⑤ 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개정

2011.5.19][[시행일 2011.11.20]]

⑥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5.19][[시행일 2011.11.20]]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별칙규정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

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 (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 처리 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제33조에 따른다.

③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과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 등에게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본조신설 2012.1.17] [[시행일 2012.7.18]]

제34조 (경쟁의 촉진)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9.22까지 유효, 2010.3.22 제10166호 부칙 제2조]]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9.22까지 유효, 2010.3.22 제10166호 부칙 제2조]]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 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9.22까지 유효, 2010.3.22 제10166호 부칙 제2조]]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제5항에 따른 협정은 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 통신 관련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와 시민·소비자들의 대응 경과

1) 주요 활동

- 한국통신 및 이동통신사의 비싼 요금과 소비자에 대한 비용전가 문제점 개선
- 1999.3.15 씨티폰 기본요금 환불요청
- 1999.8.24 전파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전파법 개정청원

- 2000.9.18 한국통신 상대 전화요금 반환 집단소송
- 2001.1.10 전화요금 인상반대 네트워크 발족
- 2001.3.14 네티즌 서명운동,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시작

2) 주요 경과

- 1999.9.6 전파사용료 폐지
- 한국통신 기본요금 대폭 인상 저지
(2,500원에서 6천원으로 올릴려고 한 것을 4천원으로 하향조정시킴)
- 이동통신 발신자표시서비스 요금 2천원으로 인하(애초통신사들 3,500원 제시)
- 2001.11.5 이동통신 요금 8.3% 인하

3) 공동 활동 성과(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도 적극 활동)

- 문자메세지 요금 30원에서 20원으로
- 10초당 과금제에서 초당 과금제로 변경(현재 1초당 1.8월)
- 발신자표시서비스 요금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 이후 무료화
- 2012년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천원 인하, 무료문자메세지 50건 제공

3. 참여연대의 통신비 이슈 대응 및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운동

참여연대는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1997.3~2006) 시절부터 한국통신 및 이동통신사의 비싼 요금과 소비자에 대한 비용전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요금 인하운동을 시작했다. 1999년 3월 씨티폰 기본요금 환불요청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전파사용료부 과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전파법 개정청원을 했고, 2000년 9월에는 직접 한국통신을 상대로 전화요금 반환 집단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2001년 1월10일에는 전화요금 인상반대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등 이동통신사의 비싼 요금과 비용전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1999년 전파사용료가 폐지되었고, 당초 한국통신이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6천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을 4천원으로 하향조정 시켰다. 또한 이동

통신사에서 발신자표시서비스를 시작하며 제시했던 3,500원의 기본요금도 2천원으로 인하시켰다. 결국 이러한 활동과 캠페인 덕에 2001년 11월에는 이동통신요금이 8.3%인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 이어 민생희망본부도, 최근 몇 년간 다시 활발하게 이동통신요금 인하와 통신공공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생희망본부는 독과점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서 잇따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고, 또 이동통신요금원가 정보공개청구소송, 통신요금TF(이명박 정부 시절 통신요금 문제와 인하를 검토·추진했던 실무기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휴대폰 단말기 폭리 및 보조금 사기 판매 사건(단말기 가격을 뻗튀기 한 후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게 부당하게 유인한 사건)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선인터넷무료음성통화(mvoip)를 차단한 통신사(SKT,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민변 민생위, 경실련, 진보네트워크 등과 공동 소송) 등의 4가지 공익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미약하지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 등의 성과가 있었다.

2014년 3월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4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로서 자리를 잡았고, 특히 생활필수품으로 생활문화의 핵심 중의 핵심이 됐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집집마다 교육비·주거비·의료비에 이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절실하게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를 호소하고 있다. 통계청·한국은행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소비지출이 758만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7.8%, 교육비는 15.1%, 주거비는 12.7%, 교통비는 11.6%, 통신비는 7%, 의료비는 5.8%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평균(2%대)보다 3~4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통신비는 가구마다 17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통신3사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로 이동통신비 지출이 2~3배로 늘어났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독과점 3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알뜰폰’ 시장에 KT가 새로 진출하려 한 점을 집중 비판했고, 나아가 이미 진출해 있는 SK의 자회사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도매 가격을 대폭 낮출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시장의 성장과 대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이 이뤄지고 무엇보다 통신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4. 참여연대의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정보공개 청구 공익소송 및 소비자 집단 공익소송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운동과 함께,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및 원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 등에 매진하고 있다. 2007년 민생희망본부 출범과 함께 ‘통신비 인하 운동 시즌2’에 돌입했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도대체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요금의 원가가 도대체 얼마인가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보기 위해 2011년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관련 정보를 모두 취합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방통위가 이를 비공개하자 곧바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2년 9월, 방통위를 상대로 진행했던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원가 산정 자료’ 등 중요한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중요 공공서비스이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를 명령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2012년 3월,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3사와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전형적인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이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판매 사건' (단말기 가격을 뺏튀기 한 후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게 부당하게 유인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2012년 10월 이동통신 제조3사, 통신3사를 상대로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여명과 함께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3사와 제조3사는 2008년부터 2010년 기간에 총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제조 3사와 통신 3사가 대략 단말기 1개당 20여만 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공익소송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또다시 입증되기도 했다. 민생희망본부는 2013년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고, 이는 곧바로 야당 의원들에 의한 법안 발의로 이어져 최근 소송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한편, 2014년 2월 6일,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 공개 청구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참여연대가 승소했다. 이동통신3사와 미래부는 1, 2심 법원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신속히 공개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이동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동통신3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진행 중이다.(미래부는 상고 포기)

※ 다윗 참여연대, 정부·이동통신3사·대형로펌 등 골리앗연합 무너뜨리다!

：이동통신요금 원가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진행경과 및 쟁점 설명

- 2011년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관련 ①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과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과 ②2011

년 기본요금 1천원 인하를 결정한 통신요금 TF의 구성원, 회의록, 회의 당시 사용 작성된 자료 공개를 청구하는 2개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함

- 통신요금원가공개 소송은 1심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통신요금 TF 관련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1심에서 회의록 등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 그런데 통신요금 TF 정보공개에 대해 1심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참여연대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된 뒤 참여연대 및 방통위 모두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결되었고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판시한 정보들은 방통위가 최근 공개함
- 그러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는 방통위가 1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원가관련 정보 중 일부만 공개한 채 나머지 정보는 방통위(법무법인 율촌이 대리)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들도 대형 로펌들(SKT : 법무법인 광장, LG유플러스 김앤장-나중에 화우로 바뀜-, KT : 법무법인 마당)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함
-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동통신과 관련된 방통위의 업무를 이관받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원가관련 정보와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 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에 대하여 공개거부를 주장해온 근거는 위 정보들은 이동통신사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를 공개하여야하는 안 된다고 변명하고 있음. 그러나 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이러한 통신서비스 중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현재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더욱 강하므로 그러한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이루려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에, 일부 영업비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막중함으로 인해 그 요금의 원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저렴한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는 일정하게 제한되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동통신서비스 원가 관련 자료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었고, 이 주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짐.
-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압력과 비판에 직면한 미래부는 상고를 포기하였지만, 방통위·미래부가 소송에 끌어들인 보조참가인인 이동통신 3사가 상고를 제기해 결국 이 공익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임.

※ 2013~2014년 진행한 이동통신 공익 소송

- 2013.03.19. 이동통신 3사 LTE 요금제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2013.09.30. SKT, KT에 저가요금제 소비자들 mVoIP서비스 차단 손해배상소송
- 2014.08.25. SKT 불통사태에 대한 대리기사, 소비자 20여명 집단 손배소 제기

5.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통신재벌 감시와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한 활동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소명은 정치권력·경제권력 등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역할일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이동통신요금인하 운동과 함께 이동통신 재벌 3사를 밀착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KT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온갖 노동탄압과 공익제보자 해고 행위, '을'들에 대한 수탈, 국민·소비자 기만 행위(인공위성 헐값 매각, 제주 7대경관 선정 이벤트 관련 국제전화사기 사건, 서비스 불법·강제 가입 행위 등), 불법·비리·낙하산 경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석채 전 회장의 불법 혐의를 두 차례 고발하여 이석채 전 회장의 사퇴와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유플러스 역시 온갖 갑을 문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유플러스 피해 대리점주 협의회와 함께 지금도 공동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새로 회장이 된 KT의 황창규씨의 첫 작품이 ‘알뜰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죽이는 알뜰폰 침탈이란 말이냐’라는 비판을 제기하여 KT가 알뜰폰 진출 시도를 1차적으로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고, 황창규 회장이 KT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명예퇴직 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재벌 3사와 역시 독과점 상태인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고, 소비자·시민들을 그들의 불법이나 횡포로부터 보호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감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이 매우 큰 통신 회사이기에 각별히 통신공공성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본다.

※ 별첨 1 : 이동통신 요금 및 단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활동 자료

- 2013년 4월 25일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함께사는서울연대(준)·청년유니온·통신소비자협동조합·KT새노조 등의 공동 기자회견에 나와 있는 통신 이슈 관련 국민 요구안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함. 가입비 폐지,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권도 비판받아 마땅할 것임.
- 통신비 부담완화의 핵심은 단말기요금 및 기본요금·정액요금제를 대폭 인하하는 것! “반값통신비 촉구 시민·소비자 기자회견”: 박근혜정부는 가입비 즉시 폐지 공약과 함께 반값통신비 이행하라!

1.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000만을 넘어섰고, 국내 인구를 감안한 보급

률이 100%를 초과해 102%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자 수 5000만 돌파는 2006년에 가입자 4000만을 돌파한 이래 5년 만의 일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생활필수품이며, 생활문화의 핵심 요소가 됐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일 것입니다. 집집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에 이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호소하게 됐고, 이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2.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출이 16조 3천5억원으로 2.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조 7천 6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3% 감소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전년 대비 7.4% 증가한 3조 4천740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보조 금 지급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것은 LTE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으로 LTE폰은 외관상으로는 일반 휴대전화 가격보다 싼 '공짜폰'이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과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짜폰'을 받으려면 값비싼 LTE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집집마다 통신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지출에서 통신비 부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및 폭리 의혹의 희생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작년 통계청·한국은행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 소비지출(세금이나 의료보험 등 생활비 이외의 지출)이 758만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7.8%, 교육비는 15.1%, 주거비는 12.7%, 교통비는 11.6%, 통신비는 7%, 의료비는 5.8% 순이었습니다.

3. 따지고 보면, 최근 보조금 사태의 본질에도 단말기 및 이동통신요금 폭리와 담합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불법인 것도 맞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과도한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통신 요금 인하 여력이 상실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측면이 있지만, 지금처럼 보조금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

되지 않을 것입니다. 초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책정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뺏튀기와 폭리, 그리고 담합이 진행되고, 이후 재벌통신 3사의 통신요금 책정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폭리와 담합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법 보조금 사태는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재벌통신 3사는 한명이라도 더 가입자를 빼오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서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보조금은 절대적으로 비싼 요금제와 장기간 가입약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재벌통신 3사의 굳건한 매출증대 전략이기에 보조금 사태가 근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통위, 공정위 등이 모두 나서서 단말기 출시 및 유통 과정과,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책정 과정 전반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가격 뺏튀기(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1/2 수준으로 판매한다거나 △작년 공정위가 적발한 것처럼 가격 부풀리기를 담합하고 부당유인행위를 저지른다거나 △고의적으로 저렴한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를 막는다거나 △아예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는다거나), 담합 및 폭리를 근절하는 것 만이 국민의 부담도 줄이고, 보조금 사태의 되풀이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겠지만, 방통위와 공정위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방통위의 직무유기와 재벌 통신 3사 봐주기는 악명이 높습니다.

4. 이동통신 사업은 장치 사업으로서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이후로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경과에 따라 요금인하의 유인이 크므로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이용하여 경쟁을 회피한 채 요금인하 요인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등 다양한 명목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왔습니다. LTE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월경부터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시행 시기, 서비스 내용 및 요금을 보면 담합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은 기존 LTE 요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재벌 통신 3사의 요금 체계 전반 모두가 폭리와 담합 의혹에 휩싸여 있고 이를 사실로 믿는 국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5. 최근 이동통신 3사들이 앞다투어 망내 무제한 요금제나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정액요금제나 장기간 약정 하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문제가 있고, 과도한 이동통신비 부담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단말기 폭리 제거 조치 및 기본요금·정액요금제의 대폭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청년, 소비자 들이 함께 나서서 반값등록금처럼 반값통신비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박근혜 정부가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원래 공약대로 가입비는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6. 한편,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운영했던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과 회의록(의사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는 1심대로 '통신요금 TF의 구성원을 공개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다만, 회의록 공개에 대한 청구는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방통위의 설명을 받아들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시하여 만들어지고, 중대한 국민관심사에 대해 다수의 고위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지고 운영된 통신요금TF 관련 회의록이 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점은 매우 아쉽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회의록이 없었다면 이 또한 방통위의 중대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중대 관심사에 대해 고위 공무원들이 모여 수십 차례 회의를 했는데,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보관하지도 않았다면 이 역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제5항에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첨 2 :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 제출관련 기자브리핑 자료

△ SKT, 직접 통신장애로 560만명 피해입고, 연쇄 불통사태에도 보상금은 몇백·몇천원에 그쳐, 피해 큰 통신소비자에게 별도 배상 약속도 이행치 않아

△ 이동통신수단 이용해 생업 잇는 대리운전·택배·퀵·콜택시·야간배달업체 종사자와 일반가입자 피해 외면 및 책임 회피하는 SKT에 책임 물어야

- 참여연대, 8.25일 대리기사·일반 가입자와 함께 1차 집단·공익소송 제기
- 막대한 순이익에도 통신비 인하 거부·소비자 보호 의무·사회적 책임 외면하는 재벌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안정성·공공성이 제고하는 계기돼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현욱 변호사/담당 실무자 : 심현덕 간사)는 지난 3월 20일에 SKT가 일으켰던 통신장애로 인하여 피해를 받으신 통신 소비자들을 모아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소장을 2014년 8월 25일(월) 오후 1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 전에 이번 공익소송의 내용에 대해 기자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익소송 원고로는 정평덕씨를 포함하한 대리기사 9인(경제적 손해와 위자료까지 1인당 20만원 청구),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팀장을 포함한 일반가입자 14명(위자료로 1인당 10만원 청구) 등 총 23인의 시민이 참여했고, 한범석 변호사·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변론을 담당합니다. 참여연대는 이 공익소송을 진행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2·3차 집단소송도 진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지난 3월 20일 SKT는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대략 6시간 정도의 중대한 통신장애를 일으켰습니다. SKT는 이 통신장애로 인하여 ‘서비스 장애 요금 감액’과 ‘서비스 장애 보상’을 지급하였습니다만, SKT 피해자·가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대리기사·택배·퀵 서비스 등을 하시는 분들의 불측의 휴업손해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반 가입자들 중에도 다종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SKT는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억울한 경우를 당한 가입자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공익소송이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어들이고 있으면서도, 통신비 인하를 거부하고, 소비자보호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거부하고 있는 재벌 통신사들의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및 공공성이 더욱 더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3. 우리 국민들에게 휴대전화는 필수품 중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 500만명을 넘어섰고(그중 SKT가입자가 2700만이 넘습니다) 보급률로는 110%에 달합니다. 어르신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가 한 대씩 다 있고, 업무용으로 2개씩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휴대전화가 없이는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필수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3월 20일에 저녁에 6시부터 밤 12까지 대략 6시간 정도의 심각한 불통사태를 일으킨 것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인 ‘가입자 확인모듈(HDR)’의 문제로 약 560만 명의 이용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송·수신서비스가 안 되는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것입니다. 3월 20일 18시경 이 이용자들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라고 나오거나 신호음이 없이 전화가 끊기는 등의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SKT 가입자 확인모듈 장치를 매우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관리해온 것이(서비스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등)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확인모듈의 장애로 송·수신서비스 장애를 받았던 560만명 뿐만 아니라 그 외의 SKT 가입자들도, 위 560만 명에게 전화 연결이 안되면서 반복적으로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트랙픽 초과로 인하여 연쇄적인 통신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SKT 가입자들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한 기타 통신사 가입자들도 전화 연결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연쇄적으로 입기도 했습니다. 즉, SKT 가입자 확인모듈 장애로부터 시작된 통신장애가 직접 피해자인 560만 명에서부터 시작하여 여타의 SKT 가입자, 기타 통신사 가입자들의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4. 그날의 통신장애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중요한 저녁 약속이 취소되었다거나 가족·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지 못하거나 안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의 아니게 주변인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등의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리기사·택배·퀵서비스·콜택시·야간배달업체(휴대폰으로만 주문받는)등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큰 피해와 손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야간배달업체 종사자들 중에는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SKT는 작년 기준으로

16조원이 넘는 매출액에 1.6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이 힘없는 서민들의 불측의 피해에 대해서 끝까지 외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성이 강한 통신사로서도, 또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으로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라 할 것입니다.

5. SKT는 3월 20일 통신장애에 대하여 SKT 전 가입자에게 ‘서비스 장애 요금 감액’으로 수백원에서~수천원 정도를 보상하였고, 가입자 확인모듈 장애를 겪은 560만 명에게 ‘서비스 장애 보상’으로 2~3천원 정도를 보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미한 보상액은 가입자들에게 저녁 약속 취소 등의 불측의 손해에도 충분한 배상이 되지 못 할뿐더러 대리기사·택배·퀵 서비스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에는 턱 없이 모자란 것이었습니다. SKT는 언론을 통하여 대리기사·택배·퀵 서비스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사업에 종사하는 이들께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한참 시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배상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T는 SKT 가입자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연결 되지 않았던 기타 통신사 가입자들에게도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6. 이동통신은 이제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보통재’가 되었고, 통신서비스의 성격상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공공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통신망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원활한 통신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통신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적 기대와 바람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이번 집단적 공익소송이 통신 가입자들의 손해를 보전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통신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근본적으로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재벌 통신 3사를 감시하고,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확립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공익소송의 원고를 모으는 과정에서 전국대리기사협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대리기사노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KT새노조 등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 지난 4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불통사태에 대해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대리기사·택배·퀵서비스 종사자들이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그동안 공익소송을 준비해서 이번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재벌·대기업과 관련된(특히 통신관련)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소비자의 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큰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물론, 소비자기본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3 : 최근 알뜰폰 이슈에 대한 대응 자료

- 결국 '통피아'가 장악한 방통위·미래부 등은 알뜰폰 영역에 통신 3사를 모두 끌어들이고야 말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통해 망 도매가 추가 인하, 전체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장치가 함께 도입됨.
- 이동통신 3사는 향후 알뜰폰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거나 시장점유율을 30%대로 낮춰야 할 것임. 물론, 망 도매가도 추가로 인하해야 알뜰폰 요금이 보다 저렴해질 수 있을 것임.

“미래부의 유플러스와 KT의 알뜰폰 진출 허용은 명백한 잘못”

“SKT와 자회사가 알뜰폰에서, 통신3사가 MNO에서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방통위·미래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지금 통신당국이 할 일은 KT와 유플러스의 알뜰폰 진출 허용이 아니라 통신3사의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통신 당국의 알뜰폰 승인 조건을 명백하게 위반

한 SKT와 자회사의 알뜰폰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어야 함.

△ 통신당국의 KT와 유플러스 알뜰폰 허용 방침,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 △ 이 통사 알뜰폰 진입 등 이슈는 새로 올 장관과 국회가 차분히 검토해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6.25일 SKT와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불공정행위 의혹 공정위 신고, 또 KT의 알뜰폰 관련 추가적인 불법행위 및 SKT의 최근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서 미래부·방통위에 2차 신고도 진행

1. 5월 2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현우 변호사)가 SKT와 KT의 여러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정부 통신 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신 당국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와 엄벌과 엄정 제재를 촉구한데 이어, 6.25일 SKT와 그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 관련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추가로 신고하였고, 또 동시에 SKT의 잇따른 소비자 기망 행위와 KT의 알뜰폰 관련 추가적인 불법 행위 의에 대해서도 미래부·방통위에 2차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 공정위와 통신 당국에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 요약본은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또, 방통위와 미래부가 엘지유플러스와 KT에게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 발표에 대한 긴급하고 강력한 규탄 및 비판 입장(성명서)을 담았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자료 : 긴급 규탄 성명서 등)

* 첨부 자료 : 긴급 규탄 성명서 등

방통위와 미래부가 엘지유플러스와 KT에게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 발표에 대한 긴급한 규탄 및 비판 성명서입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오늘 미래부가 SK텔레콤에 이어서 KT와 유플러스에게도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재벌·대기업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을 장악하게 되면 알뜰폰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줄어들 것을 깊이 우려하여,

미래부는 KT와 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발표하고 호소해왔는데, 끝내 ‘통피아’들이 또 재벌·대기업 통신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미 진출해 있는 SK텔레콤도 통신당국의 알뜰폰 진출 승인 조건을 다수 위반하였고, 알뜰폰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으므로 알뜰폰 사업 등록을 신속히 취소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묵묵부답이던 미래부가 또 다시 경제민주화, 상도의, 국민편의 등을 모두 거스르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작금 SKT와 자회사가 알뜰폰에서, 통신3사가 MNO에서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방통위·미래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통신당국이 할 일은 KT와 유플러스의 알뜰폰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3사의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통신 당국의 알뜰폰 승인 조건을 명백하게 위반한 SKT와 자회사의 알뜰폰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었어야 함에도 ‘통피아’들이 장악한 통신 당국은 국회와 국민들과 소통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발·대기업 통신사들의 알뜰폰 추가 진출 허용을 강행해버렸습니다.
- 통신 당국이 KT와 유플러스에 대해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통피아’와 재벌·대기업 통신사들의 결탁과 협잡을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편의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알뜰폰 기존 27개 사업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는 새로 오게 될 미래부 장관이 차분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차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상임위와도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 당국은 국회 상임위가 바뀌고 있는 혼란한 틈에, 새로 후보로 지명된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틈조차 주지 않는 범죄적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작금 우리나라 통신당국의 횡포와 결탁은 역사상 최악의 ‘관피아’라고 불러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지난 5월 27일 1차 신고에 이어 6.25일 SKT와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불공정행위 의혹 공정위 신고하고, 또 KT의 알뜰폰 관련 추가적인 불법행위 및 SKT의 최근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서 미래부·방통위에 2차 신고

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통신 당국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통신 당국이 통신당국과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KT와 유플러스의 알뜰폰 등록을 유보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였을 텐데, 통신당국이 무엇이 그리 급해 이렇게 신속하게 유플러스와 KT의 알뜰폰 추가 진출을 허용한 것인지 강한 의혹과 함께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통신 당국이 정말 신속히 해야 할 일은 알뜰폰 시장의 파괴와 경제민주화 거역이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을 대폭 인하하고, 재벌·대기업 이동통신 3사의 각종 불법행위와 횡포를 근절하는 것이어야 함을 왜 우리나라 통신 당국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 별첨 4 : 참여연대의 통신요금 인하 및 통신공공성 복원 운동의 배경과 의미(종합 및 요약 자료)

1) 배경과 문제의식 종합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참여연대의 통신비 인하 및 통신공공성 회복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통신비로 인한 각 가계와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더욱 커졌다. 통계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서 통신비와 관련된 일부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특정 시기에 부분적으로 통신비가 인하한 경우도 종종 있지만, 새로운 통신서비스와 통신요금 체계가 결국 더 많은 통신비 고통과 부담을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집집마다 교육비·주거비·의료비에 이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를 호소하고 있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565만명에 달하고 있다. SK텔레콤이 2천788만명, KT가 1천677만명, LG유플러스가 1천1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서 서비스 점유율이 각각 50.1%, 30.1%, 19.8%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보다 더 많은 휴대폰 가입자 수가 있는 것이다. 휴대폰 가입자가 아닌 아동,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수 성인들이 업무 등의 이유로 2개 이상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로서 자리를 잡았고, 특히 생활 필수품으로 생활문화의 핵심 중의 핵심이 됐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통계청·한국은행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소비지출이 758만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7.8%, 교육비는 15.1%, 주거비는 12.7%, 교통비는 11.6%, 통신비는 7%, 의료비는 5.8%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평균(2%대)보다 3~4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2013년 기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통신비는 가구마다 17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통신3사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로 이동통신비 지출이 2~3배로 늘어났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예나 지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인하 운동, 그 과정에서 공공적 서비스인 이동통신비의 원가 공개 및 통신공공성 회복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2)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전파사용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운동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전신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한국통신 및 이동통신사의 비싼 요금과 소비자에 대한 비용전가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요금 인하운동을 시작했다. 1999년 3월 ‘씨티폰(발신전용전화)’ 기본요금 환불요청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전파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전파법 개정청원을 했고, 2000년 9월에는 직접 한국통신을 상대로 전화요금 반환 집단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2001년 1월10일에는 전화요금 인상반대 네트워크를 발족하여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 등 이동통신사의 비싼 요금과 비용전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01년부터 약 1년간 전개된 이동통신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에는 실제로 온-

오프라인에서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1999년 전파사용료를 폐지시켰고(월 1천원씩 1년 1만2천원이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에게 부과되던 전파사용료를 공익소송을 통해 전격 폐지시킨 것임), 당초 한국통신이 시내전화 기본요금을 2,500원에서 6천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을 4천원으로 하향조정 시켰다. 또한 이동통신사에서 발신자표시서비스를 시작하며 제시했던 3,500원의 기본요금도 2천원으로 인하시켰다.(발신자표시서비스의 요금에 대해서는 여러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무료화를 주장해 발신자 표시서비스 요금을 1천원 추가 인하를 일궈냈고, 최종적으로는 2010년 이동통신3사가 발신자표시서비스 요금을 모두 무료화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2001년 11월에는 이동통신요금이 8.3%인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100만명이 넘게 참여한 시민의 힘에 기반한 성과라 할 것이다.

3) 민생희망본부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운동 지속 및 ‘알뜰폰’(알뜰통신) 이슈 대응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이어 받은 민생희망본부(2006년 출범)도 최근 몇 년간 활발하게 이동통신요금 인하와 통신공공성 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생희망본부는 독과점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서 잇따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고, 또 이동통신요금 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통신요금TF(이명박 정부가 2011년 통신요금 문제와 인하를 검토·추진했던 실무기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휴대폰 단말기 폭리 및 보조금 사기 판매 사건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소송, 무선인터넷무료음성통화(mvoip)를 차단한 통신사(SKT,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민변 민생위, 경실련, 진보네트워크 등과 함께 공동 소송) 등의 네 가지 공익 소송을 제기·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약하지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문자메세지 50건 무료 제공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역시 그것으로 그칠 수 없는 상황이다. 5천5백만 이동통신가입자들의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폭리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독과점 3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알뜰폰(저렴한 이동통신서비스 대안 시장)’ 시장에 KT가 새로 진출하려 한 점을 집중 비판했고, 나아가 이미 진출해 있는 SK의 알뜰폰 자회사(SKT텔링크)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도매 가격을 대폭 낮출 것을 동시에 요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시장이 더욱 발전하면서도 보다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통신당국은 SKT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해 경제민주화 상도의를 파괴하는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알뜰폰협회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참여연대의 거센 문제제기로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로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것과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통신망 도매요금을 추가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4)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및 소비자 집단 공익소송 제기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운동과 함께,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및 원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 등에 매진하고 있다. 2006년 민생희망본부 출범과 함께 ‘통신비 인하 운동 시즌2’에 돌입했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도대체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요금의 원가가 도대체 얼마인가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보기 위해 2011년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관련 정보를 모두 취합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방통위가 이를 비공개하자 곧바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2년 9월, 방통위를 상대로 진행했던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원가 산정 자료’ 등 중요한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요금산정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중요 공공서비스이자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를 명령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또 2012년 3월, 공정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 3사와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민생희망본부는 이를 전형적인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이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판매 사건’(단말기 가격을 뺏튀기 한 후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하게 유인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2012년 10월 이동통신 제조3사, 통신3사를 상대로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여명과 함께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3사와 제조3사는 2008년부터 2010년 기간에 총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제조 3사와 통신 3사가 대략 단말기 1개당 20여 만 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공익소송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담합과 폭리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또다시 입증되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3년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고, 이는 곧바로 야당 의원들에 의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민생희망본부는 바로 이 순간에도 소비자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한편, 2014년 2월 6일,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 공개 청구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참여연대가 승소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에 따라 미래부가 1, 2심 법원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신속히 공개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였지만, 이동통신3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성이 진행 중이다. 민생희망본부의 통신요금 대폭 인하 및 원가 공개 캠페인과 통신공공성 회복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5) 통신 재벌 감시와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한 활동

민생희망본부는 또 이동통신 재벌 3사를 밀착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KT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온갖 노동탄압과 공익제보자 해고 행위, ‘을’들에 대한 수

탈, 국민·소비자 기만 행위(인공위성 혈값 매각, 제주 7대경관 선정 이벤트 관련 국제전화사기 사건, 서비스 불법·강제 가입 행위 등), 불법·비리·낙하산 경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석채 전 회장의 불법 혐의를 두 차례 고발하여 이석채 전 회장의 사퇴와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유플러스 역시 온갖 갑을 문제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유플러스 피해 대리점주 협의회와 함께 지금도 공동 대응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또 KT와 황창규 새 회장(이석채 전 회장 후임)의 첫 작품이 '알뜰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죽이는 알뜰폰 침탈이란 말이냐'라는 비판을 제기하여 KT가 알뜰폰 진출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황창규 회상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이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원거리 부당 발령을 일삼자 이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해 원거리 부당 발령을 철회시키는 일부 성과가 있기도 했다.

앞으로도 독과점 상태의 이동통신 재벌 3사와 역시 독과점 상태인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통신 3사는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감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이 매우 큰 통신서비스 회사이기에 각별히 통신공공성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6) 성과와 의미

참여연대의 통신비 인하 및 통신공공성 회복 운동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진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민의 끈질긴 캠페인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통신분야에서의 시민권리 찾기 운동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캠페인을 전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인 시위, 집회, 기자회견, 성명 발표, 토론회, 국회의원들과 공조, 소비자단체와 연대,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공정위신고 등등... 지금도 참여연대의 관련한 활동은 활발하게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이토록 끈질기게 통신 이슈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참여연대가

‘시민’단체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민단체’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를 통해 실제로 크고 작은 통신요금 인하를 이끌어내기도 했고, 전파사용료 부과 및 발신자표시 유료화처럼 부당한 제도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여연대·시민운동과 시민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재벌·대기업들이 장악한 단말기 시장, 통신서비스의 담합과 폭리, 소비자 기민 등은 형태와 내용을 바꾸어가며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못지 않은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으론 참여연대와 시민운동의 성과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한계도 있었고 여전히 수없이 많은 과제가 참여연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통신 이슈에 대한 대응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더 깊이 연구하고,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더 끈질기게 대응하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일을 계속해나간다면 분명 통신 공공성 회복과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이중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고,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민’단체로서의 참여연대의 본분에 맞는 일이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더 자연스럽게, 더 가까이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바로 그러한 ‘시민들의 모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반값 통신비 지금도 가능하다

■■■ 이 용 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

1.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통신시장의 구조변화

- 1) 보조금의 차별적 지급금지 : 대리점, 판매점 간의 가격평준화
- 2) 단말기 출고가 가격인하 없는 보조금 규제 : 소비자 부담 가중
- 3) 자급제폰 구매시 통신서비스 요금 할인 선택권 : 자급제폰 시장 활성화
=> 외산폰 공동구매 활성화
- 4) 알뜰요금제 시장 활성화
- 5) 단말기 시장과 통신서비스 시장의 분화 가능성

2. 자급제폰과 알뜰요금제의 결합

- 1) 샤오미폰 공동구매 : for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 압력
- 2) 알뜰요금제란? : 유통방식의 차이 => 대리점, 판매점에게 위협 요인
- 3) 국내 제조사와 통신사의 위기
 - 통신3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의 의미 : for 통신서비스 시장 유통권
혜게머니

3. 국내 제조사와 통신사의 살길은?

- 1) 가격인하
- 2) 퀄리컨텐츠 장착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3) 진입장벽을 더욱 높게 축성 : 폐쇄적인 시장운영은 망하는 지름길
ex) 전파인증, 적합성 판정 요건 어렵게 => 무역보복 및 밀수입 가능성

4. 현명한 소비자의 대응책?

- 1) 공동구매 추진- 샤오미폰 국내 수입 고려사항
 - 전파인증문제
 - 한글 OS 완벽지원

- 국내 AS망 구축 : 부품조달
- 자금조달의 문제 : 샤오미펀드 조성

2) 궁극적인 통신비 문제 해결책?

- 가계 통신비 부담의 근본적인 원인 :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 **국민통신사 설립** 논의의 필요성
 - . 갑을관계 청산 => 자기 망 확보하여 주인의식 회복
 - . 설립의 주체 :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알뜰폰업체, 통신소비자, kt명예퇴직자, 58년 개띠 등 정년퇴직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
 - . 정부의 역할 : 시장의 자정기능에 맡겨라. 간섭하지 말 것
- =>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기업의 도전의식을 쇠퇴시켜 글로벌 신흥기업들에게 시장을 빼앗김.
- => 성 쌓으면 망하고 길 떠나면 흥한다. (샤오미, 구글 등)

3)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미래

- ① 통신비 인하, 단말기 거품 제거 : 목적 달성
- ② IT강국 위상 회복 : 세계의 공장은 중국, 세계의 유통은 대한민국 => 난공불락의 통신시장을 뒤흔든 힘 => 공동구매 => 글로벌 공동구매 => 세계의 중심 => 새로운 유통플랫폼 준비 www.long.or.kr => 9.11테러 이후 생겨난 거품경제 청산시스템
- ③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동 : 2011년 10월 미국의 OCCUPY운동
 -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 글로벌 부유세 부과 => 실현 가능성?
(※ 인위적인 조세정책 : 기득권층의 조세저항 초래)
 - BUT, 2011년 4월 19일 => 대한민국에선 통신생협운동 시작.
 - 투기자본, 독점자본의 수익율을 낮추는 방법 => 공동구매
(※ 1920년대 조만식 선생의 ‘물산장려운동’ 과 ‘소비조합운동’)

단말기유통법 성공을 위한 저해 요인 발굴과 유통생태계 발전을 위한 방향

■ ■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 이동통신 유통구조 및 현황

○ 유통구조 발전단계

- 소매중심 대리점 중심의 유통구조 → 1998년 도매점의 등장과 판매점등장 → 법인대리점 등장 → 2004년 홈쇼핑 등장 → 2006년 이통사 자회사 설립으로 직접 참여 → 온라인 유통의 등장 → 대기업 양판점 등장 등
- 이상에서 보듯 유통구조변화가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변
- 유통구조 변화의 주도 주체는 이통사

○ 이동통신 유통 현황 추정

- 이동통신 유통현황은 현재 정확한 현황 파악 부재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
- 이통사 전속 대리점 3,300여개 추정, 판매점 약 3만 사업자 이통사 자회사 5개 이상, 5개 홈쇼핑, 온라인 대리점 등
- 종사자 규모 약 30만명 추정. 단일 유통시장 규모로는 최대수준
- 로드 매장 규모는 약 7~8만개 수준
- 월 판매대수 약 150만대. 년간 1800만대 ~ 2천만대 판매 시장규모 년 18조 ~ 20조 규모

○ 이동통신 유통구조 분석

- 도,소매 구분이 불명확화 / 이통사 주도의 자율적 판매정책 /
- 서비스 상품판매 + 단말장치 판매 = 결합 상품 형태 → 전산 운용시스템
- 상품 특성상 종사자의 전문화 요구

□ 단말기 유통법 시행시 성공을 위한 예상 문제 및 대안

○ 홍보 부족

- 5천 6백만 이용자 대상 법안 홍보 미흡으로 유통종사자에게 그 피해가 쏠릴 가능성 높후
- 현재 홍보대행 주관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KAIT)
- 유통종사자 대상 일방적 홍보로 기대수준 미흡

○ 사전승낙제 악용소지 내포

- 법 제 8조에 의거 제도 도입시 절차의 문제 및 참여대상의 문제
- 즉, 이통3사와 KAIT 협의하에 결정. 당사자 의견 배제
- 승낙철회시 패널티 부여로 법안의 과태료, 긴급중지 명령 등 의 규제가 있음에도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 소지 발생
- 재 승낙비용 부과로 소상인 부담
- 승낙신청 데이터 공개원칙 필요
- 결국 지난 유통점 인증제 도입 실패에 의한 변형 의구심

○ 과태료 부과기준의 정립 필요

- 유통종사자들이 내방 이용자에게 단말기 유통법이 이용자 가계 통신비절감을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와 명백한 설득 내용이 있는 자료를 배포해야 신뢰성 확보 가능.
- 그러나 종사자 대상에게 본 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으나 이를 어찌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난감한 실정임
- 단말기 유통법 취지가 조기 성공을 위해 협의체 구성 필요
현재 각 종사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조정 기능 상실
결국 그 피해는 소상인과 이용자에 돌아갈 것임
- 또한, 법안 시행 이후 주기적 운용 실태조사 필요
 - 소비자 반응 / 유통종사자 여론 수렴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KMVNO협회 의견

■■■ 하 창 직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사무국장

1. 알뜰폰(MVNO) 현황

- o 2010년 3월 알뜰폰 관련 법제정(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신설))
- o 국민의 통신비 부담 해소를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
- o 이통3사 대비 약 30~50% 저렴한 요금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

※ 이통3사: 월평균요금 34,399원, 알뜰폰 월평균요금 약 12,000원

- 예시) 기존 이통사 대비 50%까지 저렴한 3G.LTE(유심 요금제) 상품 대량 출시
- o 우체국을 통한 전국 유통채널 구축('13. 9. 27)
- o 2014년 8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약 388만명, 12월말 450만명 돌파예정

2. 이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후생 증진을 위한 단통법 제정 필요성

o 단말기 가격 인하

- 통신비는 ‘단말기비용 + 통신요금’으로 구성되며,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인하가 필요
- 불투명하고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거품을 걷어낸 단말가격 인하 필요

o 중저가 휴대폰 보급 확대

- 고가 프리미엄폰 위주의 단말기 유통으로 통신비 과소비 조장
- 단말과 통신서비스 간 연계 제한으로 단말시장 및 서비스시장 경쟁축진
- 중저가 휴대폰 수요층의 통신비 부담경감 대책 필요

o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 “단말기 + 통신 서비스” 연계를 통한 고가요금제 장기이용약정 강요
- 다양한 단말기 및 다양한 요금제에 대한 고객 선택권 확대

○ 통신서비스/요금 경쟁 활성화

-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에서 통신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해 통신비 인하

3. MVNO 사업자 건의 및 요청사항

- 단통법안 작업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 중심으로 먼저 내용을 진행하다보니 MVNO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인 관계로, 단통법상에서 매월 제출하게 되어 있는 월별자료의 내용과 분량이 복잡하고 상세하여 MVNO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어 MVNO사업자의 경우, 제출서류의 간소화나 일정기간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드림

4. 결 론

-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누구든지 어디서나 동일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해소와 이용자 후생증진 및 통신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통법 시행을 희망함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단말기유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통신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차별적인 보조금 문제로 늘 시끄럽던 통신시장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어 보조금 지급이 투명해지고 가계통신비 부담도 줄어드는 건전한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은가입자가 포화되어 매출은 정체되고 수익성은 하락하는 성장정체를 맞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여 왔다. 그 동안 정부는 차별적 보조금에 대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규제를 하였음에도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근절되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 논란을 가져왔다.

시장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통신사의 보조금, 제조사의 장려금, 판매점의 마진 등이 합해져서 이용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초과할 경우 통신사만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되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은 제조사는 물론 판매점이나 대리점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판매점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판매점 사전승낙제가 도입되어 보조금 지급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 공시제는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근절하는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을 사전에 공시하기 때문에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이를 무시하고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게 된다. 또한,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요금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단말기유통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상한 준수여부 모니터링, 긴급중지명령제도, 분리공시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원금 분리공시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제조사 단말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분리공시를 해야 이용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조사 지원금 투명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도 인하될 수 있다.

가계통신비와 관련해서는 가계통신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가계통신비 문제가 통신요금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를 한 반면 단말기 가격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상승한 측면이 있다.

우선,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국제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저렴한 순서로 11~20위에 해당되고 있으며,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7개 주요도시(도쿄, 뉴욕, 런던, 서울 등) 중 1~2위로 저렴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통신사업자는 그 동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료 인하,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가입비 인하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속적인 인하를 하여왔고 특히, 알뜰폰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은 크게 낮아졌으며 전국의 우체국에서 알뜰폰서비스가 판매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13년 기준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은 피처폰이 \$230.6, 스마트폰 \$512.2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단말기 교체율도 77.1%로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신사용량도 음성통화량은 298분(OECD 평균 227분)이고 데이터 사용량도 1.19GB(세계평균 0.26GB)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단말기는 고가 단말기 비중이 높아 이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에 대한 균형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과거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률적이고 인위적인 요금인하를 시행한 바 있으나,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광대역 LTE, 5G 네트워크 진화 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투자여력만 저하시킨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급변하는 통신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인 요금경쟁 환경을 구축하여 ICT 생태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신시장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